

시·도 및 보건소용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안내



머 리 말

B형간염 주산기감염(perinatal infection)의 위험에 노출된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장래 동량이 될 새 생명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장차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데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B형간염은 세계 인구의 약 20억명이 감염된 적이 있고, 현재 약 3억 5천만 명의 환자가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으며 이 중 적어도 50만 명은 해마다 간암이나 간경화로 사망하고 있어 인류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B형간염 예방접종을 도입하였고 1995년부터는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20세 이상 인구의 약 3%가 B형간염 표면항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B형간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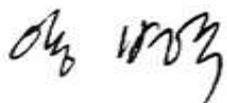
HBV는 산모에서 신생아로의 주산기 감염, 수혈, 성 접촉, 오염된 주사바늘 등으로 전파됩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주된 감염 경로는 HBsAg 양성인 산모에서 분만된 신생아로의 주산기 감염으로, 적기에 적절한 조치만 이루어지면 주산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만성 간질환과 간암의 발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산전 진찰을 보험화했고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예방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예방처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득, 국적에 관계없이 B형간염에 노출된 출생아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여, 어머니로부터 주산기에 감염 되는 사례를 약 97% 이상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정책은 앞으로 B형간염의 퇴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B형간염 산모를 발견하고 이를 교육하는 산전 진찰기관, 분만기관, 예방접종기관 그리고 관련 의료인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 과정 속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하는 모습은 공중보건 사업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본 예방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참여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안내 책자의 머리말을 빌어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예방사업이 국민의 질병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B형간염을 퇴치하게 되는 ‘질병퇴치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 1. 1.

질병관리본부장 

대한의사협회장

목 차

제 1 장	B형간염 관리현황	1
1.	B형간염의 질병부담	3
2.	우리나라 B형간염 현황	4
제 2 장	B형간염 관리정책	7
1.	목적	9
2.	전략	9
3.	향후 정책 방향	10
제 3 장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1
1.	배경	13
2.	목적	13
3.	추진 목표	13
4.	추진 방향	14
5.	경과	14
6.	실적	15
제 4 장	2015년 사업계획	18
1.	2015년 사업계획	20
2.	사업추진 체계	20
3.	비용청구 체계	22
4.	의료기관 교육	22
5.	각급 기관별 역할	23
6.	법적 근거	25
제 5 장	산전진찰기관	27
1.	교육이수	29
2.	B형간염 산모확인 및 사업설명	29

제 6 장	분만기관	31
1.	교육이수	33
2.	사업설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33
3.	대상자 및 예방처치 결과 등록	34
제 7 장	접종기관	35
1.	교육이수	37
2.	예방접종 및 검사결과 등록	37
제 8 장	비용청구	41
1.	지원비용	43
2.	비용청구 절차	43
3.	비용청구 신청 및 결과 확인	44
제 9 장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기준	47
1.	면역글로불린 접종 및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49
2.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실시기준	50
별첨 1.	주요서식	53
부록 1.	자주 묻는 질문	57
부록 2.	등록 및 시스템 이용안내	66
부록 3.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81

제 1 장

B형간염 관리현황

1. B형간염 질병부담

-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에 의한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간경변이나 간세포암과 같은 만성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보건 문제임.
- 현재 지구상에는 약 20억 명이 B형간염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적이 있고, 2억 4천만 명의 만성 감염자가 있으며(그림 1)), 매년 60만 명이 급성 B형간염, 간암, 간경화 등 B형간염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함.



(그림 1) 성인(만 19-49세)의 만성 HBV감염 유병률

- 우리나라 간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2.3명(남자 36.0명, 여자 10.2명)이며,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15.4명(남자 25.8명, 여자 6.6명)임²⁾

1) Ott JJ, Stevens GA, Groeger J, Wiersma ST. Global epidemiology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new estimates of age-specific seroprevalence and endemicity. *Vaccine*. 2012;30(12):2212-9.

2) Jung KW, Won YJ, Kong HJ, Oh CM, Seo HG, Lee JS.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cidence, Mortality, Survival and Prevalence in 2010. *Cancer Res Treat*. 2013;45(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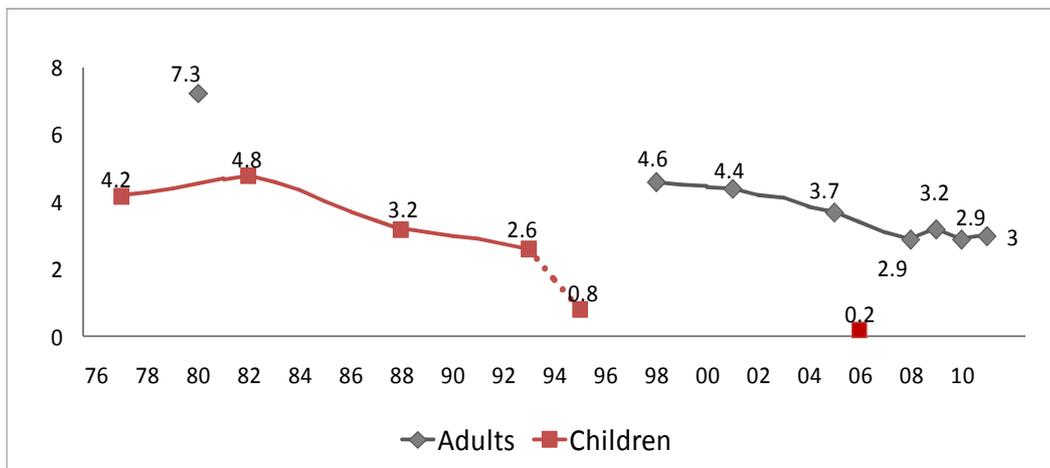
2. 우리나라 B형간염 현황

2.1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 1983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B형간염 백신이 처음 도입되었고, 1995년 국가예방접종사업(영유아 대상 정기예방접종)과 2002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실시됨
- 소아에서 B형간염 3차 예방접종률은 '08년 92.9%³⁾, '09년 98.1%⁴⁾, '11년 98.7%⁵⁾, '12년 99.0%⁶⁾, '13년 99.4%⁷⁾로 조사됨

2.2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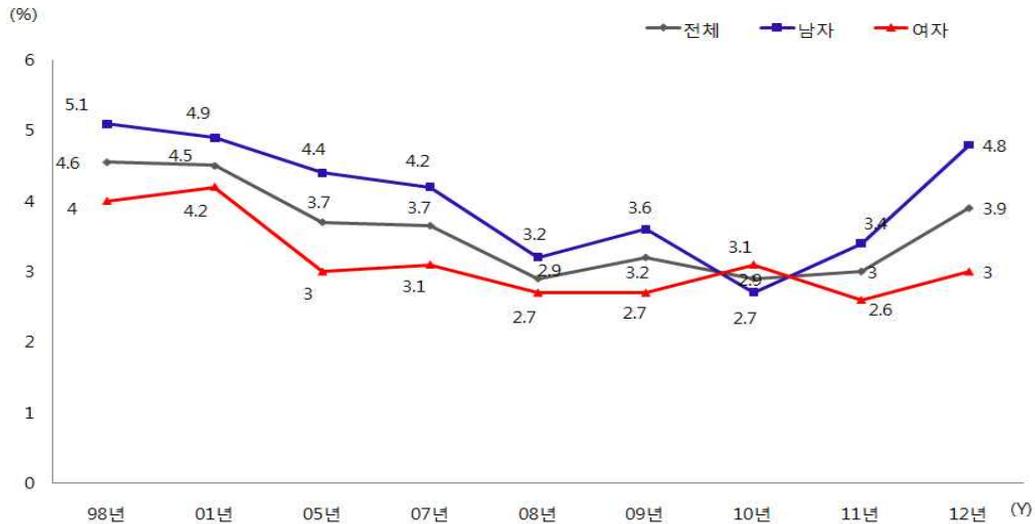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률은 최근 성인(만 10세 이상)에서 약 3.0%⁸⁾, 만 4~6세 영유아에서 0.2%로 나타났고, 이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결과임⁹⁾(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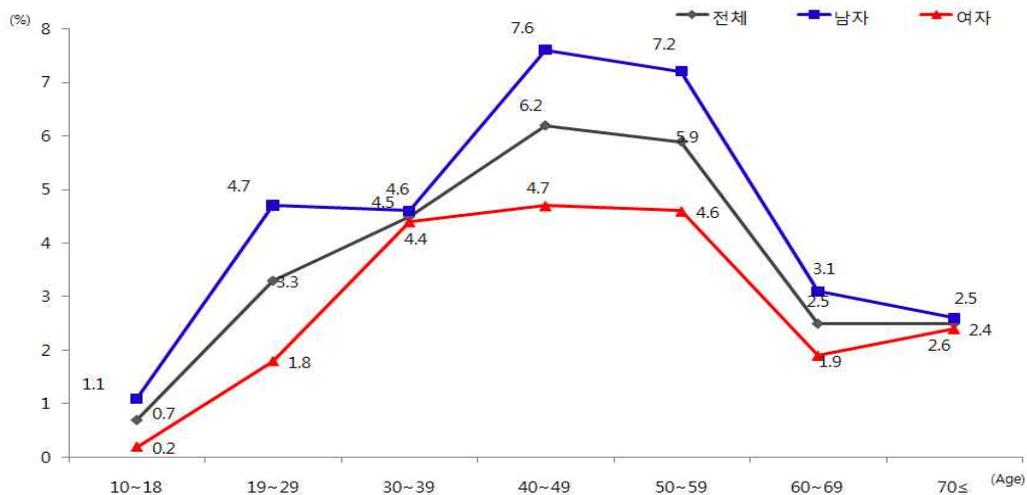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 B형간염 관리 주요사업 및 표면항원 양성률(%) 현황

- 3) 박수경 등.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및 체계 개발. 서울대학교, 질병관리본부. 2009
-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5) 이석구 등.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충남대학교, 질병관리본부. 2011
- 6) 이석구 등.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충남대학교, 질병관리본부. 2012
- 7) 이석구 등.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충남대학교, 질병관리본부. 2013
- 8) 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년도
- 9) 질병관리본부. 2006 홍역·유행성이하선염·B형간염 면역도조사 결과 보고서. 2006:8

- 2012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10세 이상 인구의 B형 간염 항원양성률은 1998년 4.6%에서 2012년 3.0%로 감소되었고, 성별로는 남자 3.4%, 여자 2.6%로 남자가 0.8%p 정도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자는 50대에서 6.7%, 여자는 40대에서 3.8%로 가장 높았음(그림 3, 4).
- 2012년도 결과가 다소 높게 나왔으나, 2013년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10세 이상 3.1%으로 '09-'11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13년 자료는 확정통계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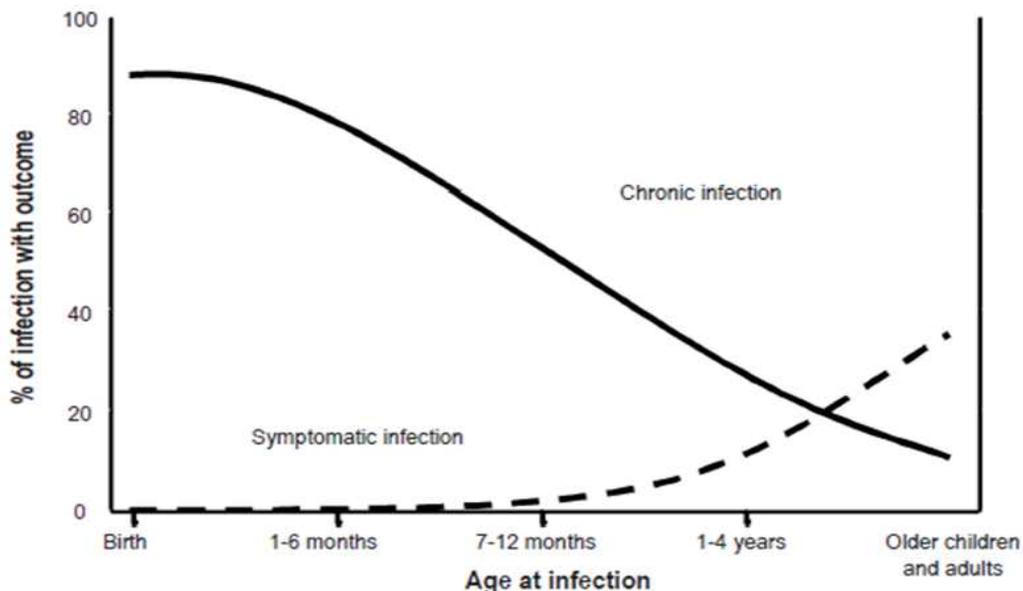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 연도별·성별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률(%)



(그림 4) 우리나라 연령별·성별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률(%)

2.2 B형간염 주산기 감염

-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0~9세 B형간염 표면항원 보유자의 38%, 10~19세 B형간염 표면항원 보유자의 59.4%가 주산기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¹⁰⁾
- 전체 만성 감염자의 40~50%가 주산기 감염에서 비롯되며, 성인이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약 90%는 합병증 없이 완전 회복되나, 주산기에 감염된 경우 90% 이상에서 만성 보유자가 되고, 전격성 간염 및 간 경변과 원발성 간암 등도 유발할 수 있음¹¹⁾¹²⁾¹³⁾(그림 5)



(그림 5) 감염시기에 따른 HBV감염의 만성화율(%)

[자료 출처 : McMahon BJ et al. J Infect Dis 1985;151:599-603]

- 10) 공휘, 김지훈, 조남영, 김윤홍, 정길만, 연종은, 김재선, 박영태, 조경환, 박용규, 변관수, 이창홍. B형 만성 간질환 환자 자녀들의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률 - 특히 0~19세 자녀들의 감염률. 대한간학회지 2001;7(4);387~391
- 11) Stevens CE, Beasley RP, Tsui J, Lee WC. Vertical transmission of hepatitis B antigen in Taiwan. N Eng J Med 1975;292:771-774
- 12) McMahon BJ, Alward WL, Hall DB, Heyward WL, Bender TR, Francis DP, et al. Acute hepatitis B virus infection: Relation of age to the clinical expression of disease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carrier state. J Infect Dis 1985;151:599-603
- 13) Moradpour D, Wands JR, Understanding hepatitis B infection. N Engl J Med 1995;332:10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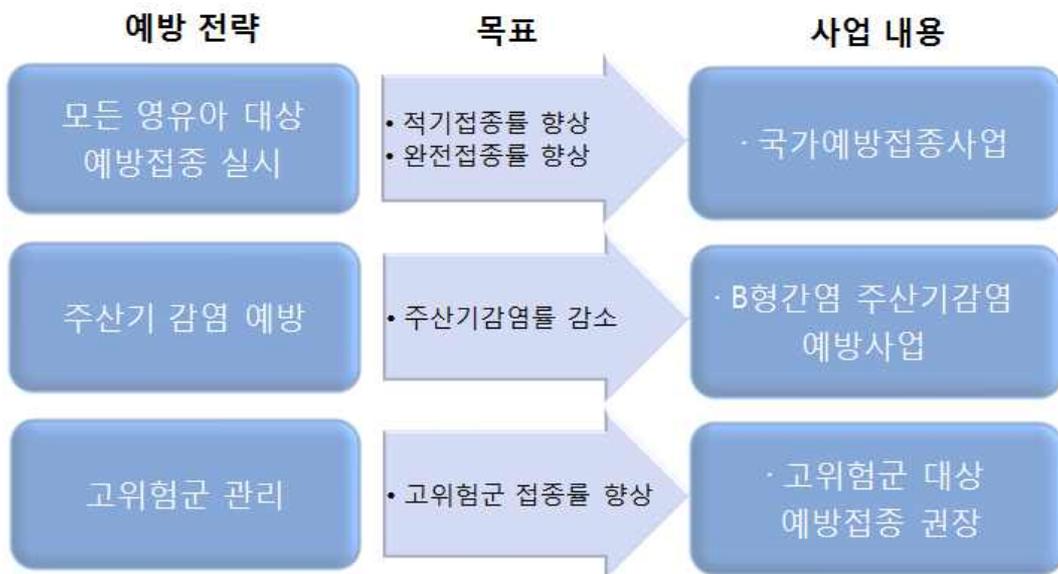
제 2 장

B형간염 관리정책

1. 목적

- 주산기감염 예방으로 인한 신생아 B형간염 환자발생 감소
- 만성 B형간염 환자 감소
- B형간염 퇴치

2. 전략



<B형간염 예방 추진전략>

1) 모든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실시

- 국가예방접종사업 강화를 통해 전체 접종률을 95% 이상 향상
- 취학전 접종력 확인사업 및 등록사업을 통해 완전접종률 및 적기접종률의 향상

2) 주산기감염의 예방

- 산전진찰기관을 통해 B형간염 산모 조기발견
- 적기 예방처치로 주산기감염으로 인한 B형간염 예방

3) 고위험군 관리

- 고위험군에 대한 B형간염 검사와 예방접종 권장

<B형간염 노출 고위험군>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되는 환자
-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 주사용 약물 중독자
- 의료기관 종사자
-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
- 성매개 질환에 노출위험이 높은 군

3. 향후 정책 방향

- 3회 예방접종률 95% 이상 유지
 - 미접종자 관리 강화
- 신규 감염 발생 억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속
 - 성인 및 고위험군 계층 대상 예방접종 권장
- B형간염 퇴치를 위한 장기적 국가 전략 개발

제 3 장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 배경

-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는 HBs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 감염이며, 주산기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감염 가능성은 산모의 HBeAg이 양성인 경우 65-93%, HBeAg이 음성인 경우는 19~25%임¹⁴⁾
- 주산기에 감염된 신생아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 불현성 감염을 앓은 후 90% 이상에서 만성 보유자가 되며 40~50대에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이행됨
- 주산기감염 위험이 높은 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나 신생아에게 B형간염 백신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 75~80%가 예방되고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97%까지 예방이 가능함¹⁵⁾

2. 목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표면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주산기감염 예방

3. 목표

- 10세미만 소아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0.1% 미만으로 유지
- 10년 이내에 전체 인구의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률 2% 미만으로 감소

14) Kwon SY, Lee CH.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Korean J Hepatol. 2011 Jun;17(2):87-95. J Hepatol. 2011 Dec;55(6):1215-21

15) Y. Ghendon. WHO strategy for the global elimination of new cases of hepatitis B. Vaccine 8(supl);129-133

4. 추진 방향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 및 출생아 관리 강화
 - 주산기감염 신생아 등록 관리를 통한 접종률 향상
 - 예방조치 실패자에 대한 관리 강화
-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사업공동추진

5. 경과

- 공동합의문 발표 : 정부·의료계가 공동으로 B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결의 (2002.6.26)
-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 시작(2002.7.1)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 WPRO)에서 한국 B형간염 관리 성과 인증(Certification) (2008.9.22)
- 서태평양지역 B형간염 관리를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WHO WPRO공동개최) (2008.11.24.~25.)
-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B형간염 관리 성과인증’ 선정(2011.6.15)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수행 방식 변경(2014.1.1)
 - ‘B형간염 예방수첩(쿠폰 포함)’ 발급·확인 절차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으로 접종 내역을 등록하고 비용청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교육관리시스템 오픈(2014.7월 오픈)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보건소용, 의료기관용)

6. 추진 실적(2002.7.~2013.12.)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신규 등록 현황

구 분	계	2002 .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자 추계(명)	172,373	7,857	16,678	16,074	14,791	15,237	15,783	14,909	14,235	15,045	14,138	14,529	13,097
신규 등록자수 (명)	168,455	5,474	14,586	15,410	14,411	15,002	16,483	15,266	14,636	14,871	15,005	14,575	12,736
등록률(%)	96.6	69.7	87.5	95.9	97.4	98.5	104.4	102.4	102.8	98.8	106.1	100.3	97.2

※ 등록자 수 기준 : 사업 대상자 수첩 발행년도 기준

※ 대상자 추계 = 년도 별 출생아 수 * 산모 표면항원 양성률

· 산모 표면항원 양성률 2002~2006 : 3.4%, 2007~2010 : 3.2%, 2011~: 3.0%

○ 접종 차수별 및 검사 등록 현황

구 분	1차접종	2차접종 ¹⁾	3차접종 ¹⁾	항원항체1차검사
계	168,499	158,431 (88.5)	149,354 (77.0)	159,188 (50.4)
2002.7월	5,474	4,887 (89.3)	4,455 (81.4)	3,049 (55.7)
2003	14,586	13,386 (91.8)	12,277 (84.2)	8,898 (61.0)
2004	15,410	14,004 (90.9)	12,745 (82.7)	9,148 (59.4)
2005	14,411	12,923 (89.7)	11,702 (81.2)	8,150 (56.6)
2006	15,002	13,421 (89.5)	12,100 (80.7)	8,429 (56.2)
2007	16,483	14,898 (90.4)	13,839 (84.0)	9,325 (56.6)
2008	15,266	13,833 (90.6)	12,945 (84.8)	8,792 (57.6)
2009	14,632	14,650 (89.3)	14,149 (96.7)	8,397 (57.4)
2010	14,870	14,781 (99.4)	14,442(97.1)	7,941 (53.4)
2011	15,022	14,880 (99.1)	14,534 (96.8)	7,7770 (51.7)
2012	14,607	14,346 (98.2)	14,082 (96.4)	6,706 (45.9) ²⁾
2013	12,736	12,422 (97.5)	12,084 (94.9)	2,583 (39.1) ²⁾

※ 기준 : 수첩(쿠폰) 발행년도 기준, 보건소 B형간염 예방사업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접종 및 검사

1)2010년 이후 통계는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과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접종력이 등록된 자

2)권장 검사 시기 경과자 중 검사결과 등록자

○ 항원 · 항체 검사결과 (2002. 7. ~ 2013. 12.)

구 분	검사결과	명	비율(%)
성공 (97.1%)	HBsAg (-) /anti-HBs Ab(+)	73,128	85.5
	HBsAg (-) /anti-HBs Ab(-)	9,904	11.6
실패 (2.9)	HBsAg (+) /anti-HBs Ab(-)	2,370	2.8
	HBsAg (+) /anti-HBs Ab(+)	123	0.1
계		85,528	100.0

○ 보건의료기관 참여현황(2002. 7. ~ 2013. 12.)

구 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계	35,663	1,927	1,851	27,124	4,761
2002.7	1,203	89	46	817	251
2003	2,700	141	88	2,070	401
2004	3,034	144	108	2,374	408
2005	3,050	149	112	2,374	415
2006	3,078	157	125	2,384	412
2007	3,098	149	129	2,391	429
2008	3,175	162	151	2,417	445
2009	3,118	158	166	2,348	446
2010	3,241	181	192	2,445	423
2011	3,373	189	219	2,549	416
2012	3,293	175	245	2,509	364
2013	3,300	233	270	2,446	351

※ 수첩 발행년도 기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통해 쿠폰(접종)을 사용한 보건의료기관 현황

제 4 장

2015년 사업계획

1. 2015년도 사업계획

1.1 사업대상 및 사업량

- 사업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사업량
 - 신규등록 : 13,098명 ≒ 436,600명(2013년 출생아수) × 3.0% (산모 HBsAg 양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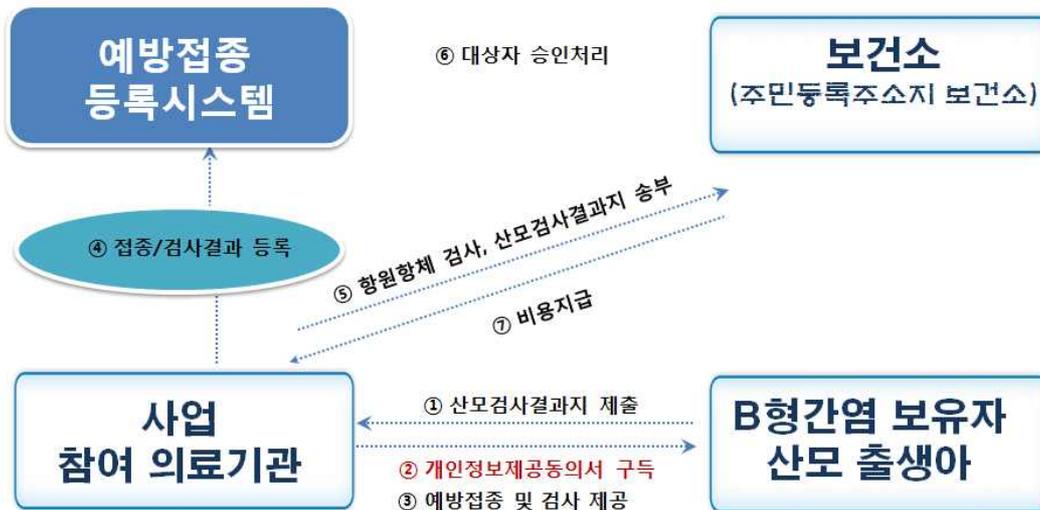
1.2 참여기관 및 사업내용

- 분만기관 : 사업 설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대상자 정보 및 예방접종 내역 등록
- 접종기관 :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 등 예방처치(예방접종+검사) 결과 등록

1.3 소요예산 : 1,733,488천원 (국비 814,823천원, 지방비 918,665천원)

1.4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2. 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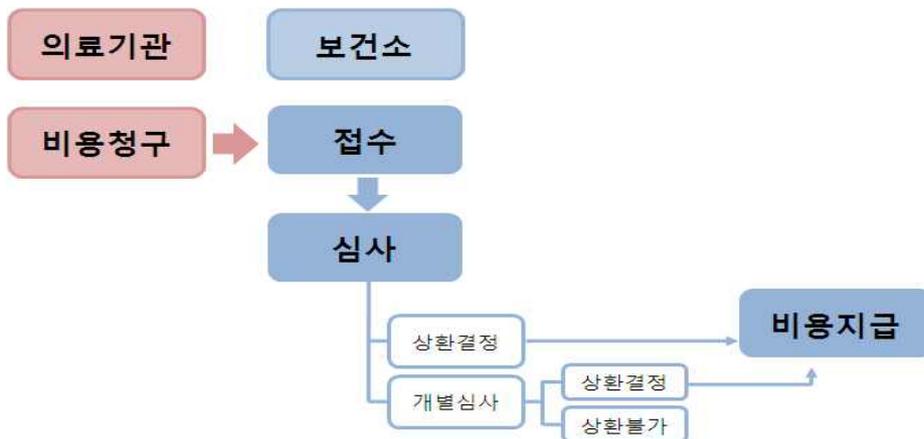


‘13년 대비 ’14년부터 변경된 관리체계(참고)

사업 주체	단계별	기존	2014년도 변경사항
산모	대상자 신청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HBIG,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수첩(쿠폰) 수령 및 보관	<u>수첩(쿠폰) 수령 및 보관 불필요</u>
	B형간염 2,3차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쿠폰 제출 후 예방접종 및 검사받음	<u>쿠폰 제출 절차 없이 예방접종 및 검사받음</u>
산전진찰 기관	대상자 발견 시	사업 안내	사업 안내
분만기관	대상자 신청 및 비용청구	① 대상자 수첩 발급 ② HBIG+1차 예방접종 - 산모검사결과지, 접종 쿠폰 보건소에 제출 ③ 1차 예방접종 이후 - 쿠폰 보건소에 제출	① <u>대상자 수첩 발급 불필요</u> ② HBIG+1차 예방접종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 대상자 및 예방처치 결과 전산등록 - 산모검사결과지 보건소에 Fax로 제출(부록 3. 참조) ③ 1차 예방접종 이후 - <u>쿠폰 보건소에 제출 불필요</u> ※ 시스템 등록하면 자동 비용 청구
접종기관	예방처치 검사시행	① 2, 3차 예방접종 - 접종 쿠폰 보건소에 제출 ② 항원·항체검사 - 검사 쿠폰 보건소에 제출 - 검사 결과지 보건소에 제출	① 2, 3차 예방접종 - <u>접종 쿠폰 제출 불필요</u> ※ 시스템 등록하면 자동 비용 청구 ② 항원·항체검사 - <u>검사 쿠폰 제출 불필요</u> ※ 시스템 등록하면 자동 비용 청구 - 검사 결과지 보건소 제출
보건소	비용지급	① HBIG+1차 예방접종 - 산모검사결과지, 접종 쿠폰 시스템에 등록 ② 2, 3차 예방접종 - 접종 쿠폰 시스템에 등록 ③ 비용청구 접수 및 지급처리	① HBIG+1차 예방접종 - <u>쿠폰 등록 불필요</u> - 산모검사결과지 받아서 확인 후 대상자 승인 ② 2, 3차 예방접종 - <u>쿠폰 등록 불필요</u> ③ 비용청구 접수 및 지급처리

3. 비용청구 체계

-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시 자동으로 비용청구 가능(가급적 당일 신청하며, 비용청구는 접종 후 30일 이내 완료)
 - ※ 출생신고 전 6개월 이하의 신생아는 반드시 산모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청구 가능



- (보건소) 비용청구된 예방접종 내역에 대해 심사(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비용지급(청구한 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방접종 내역은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약 1일 소요) 후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심사 및 비용지급 실시
 - 출생신고 전 신생아는 산모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심사 및 비용지급 실시

4. 의료기관 교육

- 교육과정
 - (교육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http://edu.cdc.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14.2월 오픈예정)

- (교육내용) 사업체계, 비용청구 체계 등 세부 사업내용과 대상자 접종 및 검사 기준, 관련 시스템 사용법 등
- (교육대상)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 (지자체 자체 교육) 필요시 지자체 주관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 신규 의료기관 등록 방법(부록참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 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행정업무 → 의료기관 관리 메뉴에서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참여 여부'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됨
- (수료확인) 학습자 : '내강의실 ⇒ 수강완료과정'에서 수료 확인

5. 각 급 기관별 역할

- 시·도의 역할
 - 사업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사회 및 관련 학·협회 등 관련기관 대상 홍보
 - 사업 시행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시·군·구의 역할
 - 사업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사회 홍보
 - 관련 학·협회 및 의료기관 홍보
 - 의료기과 교육 관리
 - 교육이수자 관리
 - 자체교육 시행
- 의료기관의 역할
 - 교육 이수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예방접종 사업 수행
 - (산전진찰기관) B형간염 산모 확인 및 사업 설명
 - (분만기관) 사업 설명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사업 대상자 및 예방처치 결과 등록, 산모검사결과지 전송
 - (접종기관) 예방처치 및 검사결과 등록, 항원·항체 검사결과지 전송



6. 법적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9조

제19조(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 확인)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의 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 5 장

산전진찰기관

1. 교육 이수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방법) 관할 보건소에 사업 참여 신청 전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15.4월 오픈예정)
 - (교육대상)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 교육시스템에서 수료 확인 및 기본교육에 한해 이수증 출력 가능
- 교육 이수 및 수료 확인
 - (교육이수) 교육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개설된 기본·보수교육 과정 이수
 - (수료확인) '내강의실 ⇒ 수강완료과정'에서 수료 확인

2. B형간염 산모 확인 및 사업 설명

- 산전 B형간염 검사 안내 및 실시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HBeAg양성자 포함) 검사결과 확인
 - 모든 임신부는 임신 초기에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위험군 또는 현재 간염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말기에 재검사 권장
 -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장
 - ※ 산전 진찰기관의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홍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설명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양성인 경우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설명
 - 산모에게 「B형간염 검사결과지」 사본 발급

제 6 장

분만기관

1. 교육 이수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방법) 관할 보건소에 사업 참여 신청 전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15.4월 오픈예정)
 - (교육대상)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 교육시스템에서 수료 확인 및 기본교육에 한해 이수증 출력 가능
- 교육 이수 및 수료 확인
 - (교육이수) 교육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개설된 기본·보수교육 과정 이수
 - (수료확인) ‘내강의실 ⇒ 수강완료과정’에서 수료 확인

2. 사업 설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설명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 양성인 경우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 분만 전 대상자 및 접촉내역 정보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획득(별첨 1)
 - 추적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 간 대상자 및 접촉내역 정보 공유
 - 단, 분만 시 B형간염 검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분만 후 즉시 사업 설명과 함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획득
 - ※ 대상자의 추적관리 및 적절한 처치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가 필요함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 산모가 B형간염 보유자라는 정보가 산모 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3. 대상자 및 예방처치 결과 등록

■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대상자 등록(신청)

- 등록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양성 산모
- 등록방법 : 대상자 정보와 산모 정보(인적사항/B형간염 검사결과지)를 질병 보건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등록 시 주의사항
 - 산모검사결과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을 모두 등록해야 대상자 신청이 완료되며, 산모검사결과를 입력한 의료기관에서만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 등록이 가능
 - 의료기관에서는 면역글로불린 및 1차 예방접종 등록 시에만 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차수부터는 관할보건소로 직접 신청
- ※ 대상자 등록방법(부록참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예방접종등록 메뉴에서 피접종자 정보 입력하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체크박스에 체크 하신 후 검사기관명, 산모검사결과 등 입력하여 '저장'버튼 클릭

■ 산모검사결과지 Fax로 제출

- 등록한 대상자의 산모 검사결과지를 피접종자 주소지보건소로 Fax를 통해 제출
- ※ <부록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FAX번호>참고

■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실시 및 등록

- 출생 후 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등록방법(부록참조)

제 7 장

접종기관

1. 교육 이수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방법) 관할 보건소에 사업 참여 신청 전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15.4월 오픈예정)
 - (교육대상)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 교육시스템에서 수수료 확인 및 기본교육에 한해 이수증 출력 가능
- 교육 이수 및 수수료 확인
 - (교육이수) 교육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개설된 기본·보수교육 과정 이수
 - (수수료확인) '내강의실 ⇒ 수강완료과정'에서 수수료 확인

2. 예방접종 및 검사결과 등록

- B형간염 2차 및 3차 예방접종 실시
 - B형간염 2차 예방접종을 출생 후 1개월에 접종 (1차 접종 후 최소 4주 이상)
 - B형간염 3차 예방접종을 출생 후 6개월에 접종 (2차 접종 후 최소 8주 이상, 1차 접종 후 최소 16주 이상)
 - 미숙아의 경우(출생 체중 2Kg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 출생 직후 접종한 첫 번째 B형간염 예방접종을 횡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출생 후 1,2,6개월에 3회 더 접종(**총 4회, 0-1-2-6개월 접종일정**)
 - ※ 상세 내용은 '제9장 예방접종 및 검사 실시기준' 참조
- 추구 관리
 - B형간염 1차 항원·항체검사
 - 대상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중 면역글로불린과 B형간염 3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대상자
 - 기초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생후 9~15개월에 항원·항체 검사를 반드시 EIA, ECL, CIA 등의 정량검사법으로 실시
 - ※ 항원·항체 검사결과 모두 정성결과(+양성, -음성)와 정량결과(항원·항체가/단위)를 함께 표기
 - ※ 생후 9~15개월 [지연 접종시 3차 접종 후 최소 1개월 이후]에 검사하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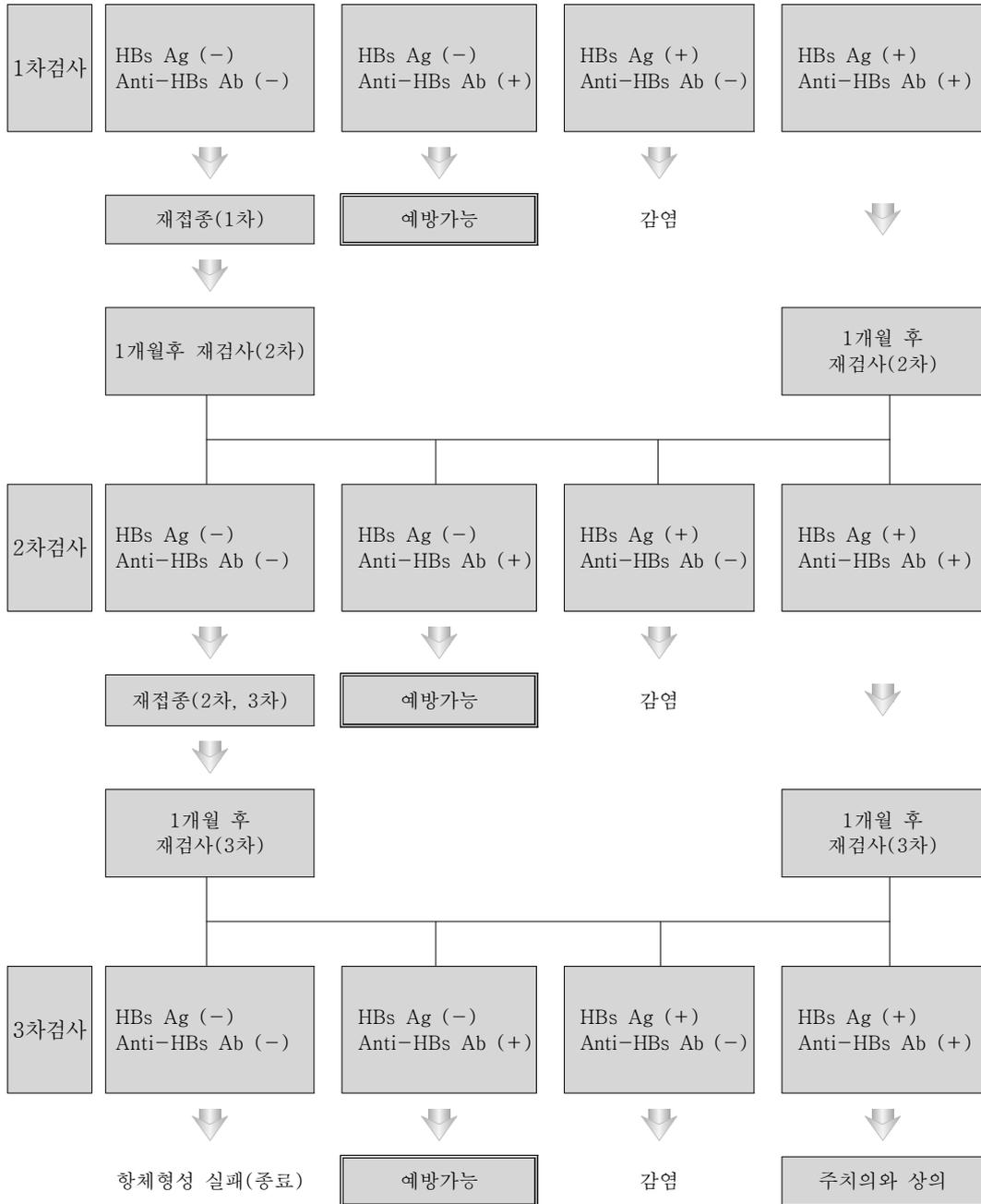
- B형간염 1차 재접종
 - 대상자 : B형간염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Ab(-))
 - 검사결과 확인 후, 1주일 이내 B형간염 재접종(1차) 실시

- B형간염 2차 항원·항체검사
 - 1차 재접종 후 최소 1개월 지나 2차 항원·항체 검사를 반드시 EIA, ECL, CIA 등의 정량검사법으로 실시
 - 1차 검사결과 (HBsAg(+), anti-HBs Ab(+))인 경우도 1개월 후 2차 항원·항체 검사 실시
 - ※ 항원·항체 검사결과 모두 정성결과(+양성, -음성)와 정량결과(항원·항체가/단위)를 함께 표기

- B형간염 2·3차 재접종
 - 대상자 : B형간염 2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Ab(-))

- B형간염 3차 항원·항체검사
 - 2·3차 재접종 후 최소 1개월 지나 3차 항원·항체 검사 실시
 - 2차 검사결과 (HBsAg(+), anti-HBs Ab(+))인 경우도 1개월 후 3차 항원·항체 검사 실시
 - 3차 항원·항체 검사 후 항체미형성자에 대한 추가 재접종 여부는 사례별로 의료인이 판단하며 동 접종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완료후 추서관리의 흐름도>



* Anti-HBs Ab \geq 10mIU/mL인 경우 항체 양성, < 10mIU/mL인 경우 항체 음성

제 8 장

비용 청구

1. 지원비용

- ‘15년 예방접종 사업 지원비용 : 1인당 133,700원
 - (백신비용) 국가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 단가 적용
 - (접종비, 검사비) ‘15년 건강보험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
- 청구 내용
 -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비용 : 48,000원
 - ※ 기존에 쿠폰 발급비(1,000원)는 제외하고, 대상자 등록비(1,000원)가 포함됨
 - 2·3차 예방접종 비용 : 21,700원
 - 항원·항체 검사 비용 : 41,700원

구 분	2015년		2014년		비고
계	133,700원		126,700원		+7,000원
HBIG & 1차 접종	48,600원	26,900원 ¹⁾	48,000원	26,800원 ¹⁾	+600원
		21,700원 ²⁾		21,200원 ²⁾	
2차 접종	21,700원		21,200원		+500원
3차 접종	21,700원		21,200원		+500원
항원·항체 검사	41,700원 ³⁾		36,300원 ³⁾		+5,400원

¹⁾ HBIG 투여 지원비용 = 평균 납품가(23,000원) + 의약품 관리료(86원) + 주사료(2,737원) + 쿠폰발급비(1,000원)

²⁾ B형간염 예방접종 지원비용 = 백신단가(2,230원) + 의약품 관리료(86원) + 주사료(2,737원) + 초진 진찰료(16,674원)

³⁾ 검사 지원비용 = 항원항체 검사료(24,983원) + 초진 진찰료(16,674원)

※ ‘14년 의정간담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항원항체 검사 시 진찰료를 초진 진찰료 수준으로 변경(12,071원 → 16,674원)

2. 비용청구 절차

- 비용청구
 - 예방접종내역 등록 시 ‘예방접종 등록’ 입력화면에서 ‘비용청구 비용’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비용 확인 후 등록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시 자동으로 피접종자 또는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보건소에 청구(가급적 당일 신청하며, 비용 청구는 접종 후 30일 이내 완료)
 - 출생신고 전 6개월 이하의 신생아는 산모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만 안행부에서 확인되면 비용청구 가능

- 단, 보건소에서 대상자 승인 전인 경우 다음 차수에 대한 비용청구 불가
- ※ 주민등록번호 오류인 경우 신청내역 접수가 불가(‘인증오류’로 구분됨)하오니, 보호자에게 재확인 후 수정

3. 비용청구 신청 및 결과 확인

- 신청한 접종내역은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공유센터’를 거쳐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수 후 비용청구 심사 및 지급
 - 등록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보건소에서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등록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인증오류로 분류된 경우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청구현황’ → ‘안행부오류내역’
- 심사결과는 ‘**상환결정**’, ‘**상환불가**’, ‘**인증오류**’로 구분되며, 지급이 완료된 경우 ‘**지급완료**’로 구분
 - (상환불가) ‘상환불가 사유’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며, 관할보건소로 문의
 - (인증오류)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경우로, 의료기관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를 확인할 수 없어 비용청구 신청내역 접수 및 심사 불가
- ※ 비용청구 내역 조회방법(부록참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비용청구관리 → 비용청구 지급결과 메뉴에서 조회기간 설정한 후 신청 내역 조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비용청구 절차>

○ 지급기한

- 지급 기한 : 의료기관에서 접종비를 청구한 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 보건소 :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접종비는 해당년도의 접종비 지급단가 적용 (접종일·검사일 기준)

[상환불가 접종내역]

▶ 중복접종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 기준으로 중복접종인 경우

▶ 최소 접종 연령을 미준수한 이른 접종

- 최소 접종 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된 경우

※ 향후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따른 접종 일정에 맞춰 재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일정에 맞춰 재접종시 비용 상환 가능

▶ 최소 접종 간격 미준수한 이른 접종

- 최소 접종 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

◆ 출생신고 전 6개월 이하의 신생아 접종에 대한 심사 및 지급

- ▶ 접종내역 등록 시 신생아의 출생일 정보와 함께 반드시 산모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만 비용 청구가 가능함

※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보호자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확인되면 바로 비용 청구 및 지급 가능

◆ 외국인 자녀, 미등록 외국인 및 시설아동에 대한 심사 및 지급

- ▶ (외국인 자녀) 접종내역 등록 시 인적사항 등록 내역에 피접종자 구분은 ‘외국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비용청구
- ▶ (미등록 외국인) 접종내역 등록 시 인적사항 등록 내역에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비용청구
- ▶ (시설 아동) 접종내역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시설아동 관리번호’를 기입하여 비용청구

제 9 장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기준

1. 면역글로불린 접종 및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1.1 일반 원칙

- 접종 일정 : 생후 0, 1, 6개월, 첫 접종은 출생 후 12시간 이내 권장
- 최소 접종 간격
 - 2차접종 : 1차 예방접종 후 4주 이후
 - 3차접종 : 2차 예방접종 후 8주 이후, 1차 예방접종 최소 16주 이후
- 접종 용량 : 0.5 mL(HBsAg 10ug)
- 접종 부위 : 영아는 대퇴 전외측부, 그 이상 연령은 삼각근에 근육주사

1.2 출생 후 예방처치

- 산모가 HBsAg 양성인 경우
 - 가능한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HBIG, 0.5mL)과 함께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2·3차 백신은 생후 1, 6개월에 접종
- 산모의 HBsAg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가능한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백신을 접종하고, 산모가 HBsAg 양성으로 판정되면 면역글로불린(HBIG, 0.5mL)을 가능한 빨리(늦어도 7일 이내)접종
 - 2·3차 백신은 생후 1, 6개월에 접종

1.3 미숙아(출생시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에 대한 출생 후 예방처치

-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는 출생시 접종 후 1개월 이후에 미숙아 재접종하여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총 4회 접종 (**0-1-2-6 접종일정**)

1.4 재접종

- B형간염 1차 재접종
 - 대상 : B형간염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Ab(-))
 - 방법 :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재접종
- B형간염 2·3차 재접종
 - 대상 : B형간염 2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Ab(-))
 - 방법 : 2차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1차 재접종일로부터 1개월 후) 2차 재접종하고, 2차 재접종일로부터 5개월 이후 3차 재접종 실시
- 최소접종간격
 - 2차 재접종 :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4주 이후
 - 3차 재접종 : 2차 예방접종 후 최소 8주 이후,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16주 이후

2.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실시기준

- 검사 일정
 - 적정검사시기 **생후 9~15개월**, 반드시 3차 접종(생후 6개월) 후 최소 1개월 간격을 두고 검사
 - ※ 다른 검사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검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EIA, ECL, CIA 방법의 정량검사를 시행
- 검사결과 표기 방법
 - 항원·항체 검사결과 모두 정성결과(양성 +, 음성 -)를 포함하여 정량결과(항원 가·항체가/단위)를 함께 기재
- 항체가의 정량 검사결과 판독 기준
 - 예방가능한 ‘항체가’는 10 mIU/mL 이상
 - 항원 음성이고 항체가 음성(항체가가 10 mIU/mL 미만)일 경우 재접종 필요
 - ※ 주의 : 시험 기기별로 참조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 기준에 준하여 판독

[참고] <비용지원 검사방법>

검 사 방 법		항체가 측정	인 정
효소면역검사법 (Enzyme immunoassay : EIA)	미세입자효소면역검사법 (microparticle enzyme immunoassay : MEIA)	가능	○
	형광효소면역측정법 (fluorescent enzyme immunoassay : FEIA)	가능	○
	효소면역측정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	가능	○
화학발광면역측정법 (Chemiluminescent immunoassay : CIA,CLA,CLIA) or (Electrochemiluminescence : ECL)		가능	○
방사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 : RIA)		측정이 어려움	X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Immunochromatography assay : ICA)		불가	X
수동혈구응집법 (Passive hemagglutination : PHA)		불가	X

자문기관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 굵은 테두리안 검사방법으로 시행한 경우에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방법>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방법

1) 응집법(Particle Immunoassay)

항원과 해당 특이 항체의 결합에 의하여 응집상태로 나타내는 것을 원리로 하여 항원·항체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접응집법과 간접응집법이 있으며,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는 간접응집법으로 검사하고 이를 reverse passive hemagglutination (RPHA : 역수동혈구응집법)이라함

RPHA는 민감도가 EIA나 RIA 보다 1,000배 정도 낮고, 항체가를 측정할 수 없음

2) 효소면역측정법(Enzyme Immunoassay, EIA)

항원과 항체간의 반응 유무 정도의 효소를 표지자로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써 이중 homogeneous EIA법과 heterogenous EIA법이 있는데, B형 간염은 heterogenous EIA법으로 검사하며, 이중 enzyme linked immunosorbent immunoassay(ELISA)법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이외에도 fluorescent enzyme immunoassay(FEIA)법, chemiluminescent immunoassay(CIA), colorimetric immunoassay 검사방법이 있음

EIA는 민감도가 RIA와 비슷하고, 구형의 EIA 측정기계는 항체가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 검사단계가 필요하지만 비교적 신형의 EIA 측정 기계들은 검사하면 항체가 도 같이 확인할 수 있음

3)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RIA)

효소 대신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지자로 이용하여 반응시킴으로써 항원 및 항체 등을 측정하는 방법임

RIA는 특이도가 EIA보다 높으나 RIA는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 점이 있으며 RIA는 항체가를 측정하기위해 별도 검사단계가 필요함

별첨자료

I. 주요서식

부 록

I. 자주 묻는 질문

부록 1

자주 묻는 질문(Q&A)

대상자 기준

- Q**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 A** 1.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및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2002. 7. 1.이후 영유아의 경우 대상자가 되며,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 재접종 및 재검사에 대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2. 산전진찰기관 또는 분만기관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및 e항원(HBeAg)양성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산모가 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및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는 참여가 가능하나,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3. 대상자가 출생 후 뒤늦게 참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3. 산전 또는 분만 시 시행했던 B형간염 검사 결과지를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로 제출하여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담당자는 산모에게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획득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대상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 <부록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FAX번호>참고
※ 의료기관에서는 면역글로불린 및 1차 예방접종 등록 시에만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4. 과거년도 쿠폰 대상자(2002년~2013년)는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A** 4. 기존 쿠폰을 사용하던 대상자(아기 출생년도: 2002.7월~2013.12월)들도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피접종자 주민번호 또는 산모 주민번호로 조회 시 대상자 및 예방처치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Q** 5. 과거년도 쿠폰 대상자(2002년~2013년)가 쿠폰을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5. 의료기관에서는 산모에게 변경된 사업 방식에 대해 설명한 후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내역을 등록하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자동 비용청구가 됩니다.
- Q** 6. 외국인 자녀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6. 외국인 자녀도 내국인 어린이와 동일하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에 대한 비용 청구 시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인적사항 등록 내역에 피접종자 구분은 ‘외국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Q** 7.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등) 자녀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A** 7. 미등록 외국인 자녀라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접종(검사) 시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인적사항 등록 시 보건소에서 해당 대상자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Q** 8. 시설아동도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접종내역 등록 시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해당 시설아동 관리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Q** 9. 출생신고 이전의(주민등록번호 발급 전) 신생아나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A** 9. 출생신고 전 신생아라도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기록 등록 시 반드시 산모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등록 및 비용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된 보호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비용 청구가 됩니다.
- Q** 10. 피접종자가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A** 10. 사업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관리번호 발급을 통해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해당 대상자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등록절차

- Q** 1. (의료기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지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대상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에서 피접종자 정보 입력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산모 검사결과지 입력 후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 등록하면 완료

적용대상 의료기관

- Q** 1.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접종비용 지원이 되나요?
- A**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관할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Q** 2.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2.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아기수첩,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시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로 등록되기 이전이라면 산모의 B형간염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여 의료기관 관리

- Q**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1.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신청하여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고,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15.4월 오픈예정)
- Q** 2. (의료기관) 계약 체결 후 비용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A** 2.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참여의료기관으로 신청 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여부 및 참여일을 등록하면 참여일 기준 예방접종(검사)건부터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용청구 기준

- Q** 1. 예방접종 및 검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 A** 1. 2015년 지원 금액은 면역글로불린 26,900원,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 21,700원, 항원·항체 검사 비용 41,700원으로 접종일·검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Q** 2. (의료기관) 접종한 내용에 대한 비용 청구는 어디서 하나요?
- A** 2. 비용 청구는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인적사항 등록 시 피접종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Q** 3. 구체적인 비용청구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3.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없이 중복 접종을 한 경우와 최소 접종 연령 또는 최소 접종 간격보다 이른 접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소 접종 연령 또는 최소 접종 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되었다면 무효로 간주하고 다시 접종해야 합니다.
- Q** 4. 과거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어서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 A** 4.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해 과거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청구가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행한 중복접종은 비용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Q** 5. B형 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는데 항체가가 낮아 재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A** 5. B형간염 항체 검사결과 anti-HBs Ab \geq 10mIU/mL인 경우 양성으로 판단하며,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원(-), 항체(+)로 나온 경우 재접종 및 재검사에 대한 예방접종 및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등록 및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 Q** 6. 검사를 EIA, CIA, ECL의 정량검사방법으로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 A** 6. 사업에서 권장하는 항원·항체검사방법 이외에는 접종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관할 의료기관에서 다른 검사방법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청구 심사

- Q** 1. (의료기관) 비용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1. 참여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내역 등록 시 안전행정부를 통해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확인 후 주민등록상 관할지역 보건소로 자동 비용 청구됩니다.
- ▶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 예방접종 등록]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비용청구관리] → [비용청구 지급결과]에서 비용청구 신청, 심사, 지급된 내역을 확인
 - ※ 단, 보건소에서 대상자 미승인 된 건은 비용청구 접수가 불가합니다.

Q 2.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청구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2.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행 후 가급적 실시간으로 예방접종 기록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 조회를 통해 중복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사정상 당일 비용 청구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접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청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Q 3. (의료기관) 비용청구 신청 후 비용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3. 보건소는 비용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지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상환결정 건에 대하여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월 2회 이상) 비용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 예방접종 등록]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비용청구관리] → [비용청구 지급결과]에서 비용청구 신청, 심사,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록

Ⅱ. 등록 및 시스템 사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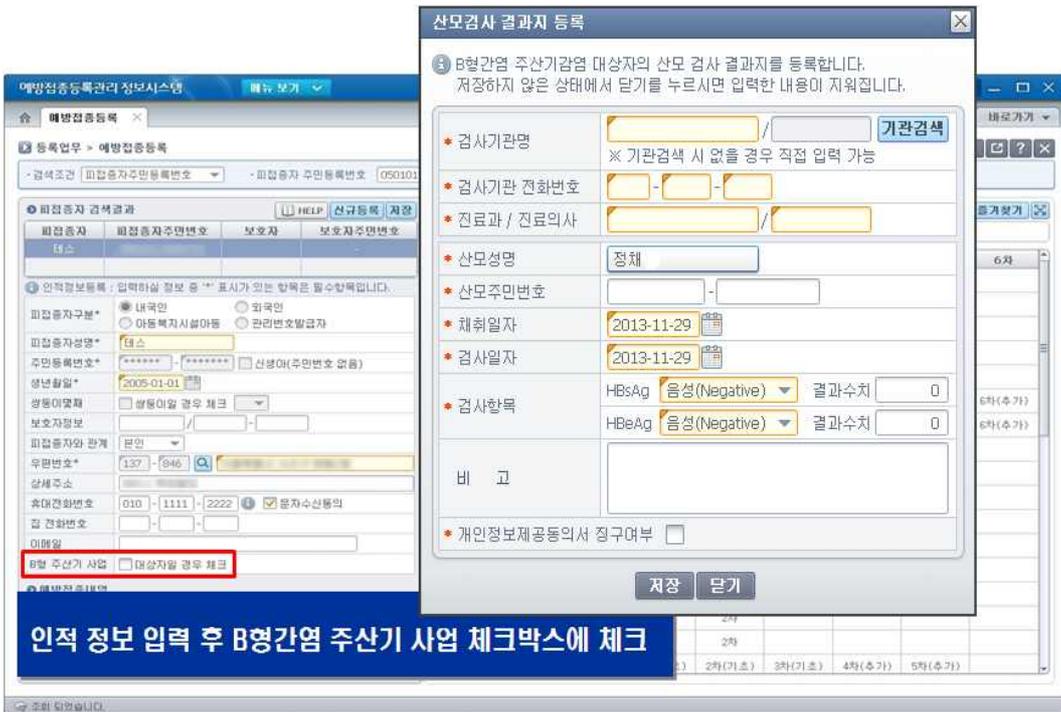
부록 2 **등록 및 시스템 이용안내**

1. 등록 및 시스템 운영

1.1 대상자 등록신청

1. 산모 검사결과지 입력

- ① 로그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서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 예방접종 등록]을 클릭합니다.
- ② 기존의 피접종자 인적등록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③ 산모검사 결과지 입력 창이 나오면 검사기관명, 검사기관 전화번호, 진료과, 진료의사, 산모성명, 산모주민번호, 채취일자, 검사일자, 검사항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획득 여부 등을 모두 입력합니다.



* 검사항목에서 HBsAg 또는 HBeAg가 양성인 경우에만 대상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림 1. 대상자 등록신청(1)>

- ③ 산모검사 결과지를 입력하고 인적정보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예방접종 등록표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스케줄에 맞게 자동 변경됩니다.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 검색조건 보호자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피접종자성명 강아기 주민등록번호 131129-3 실재생년월일 2013-11-29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B형간염	B형간염 (혈장유래)	1차	2차	3차			

피접종자성명 강아기 주민등록번호 131129-3 실재생년월일 2013-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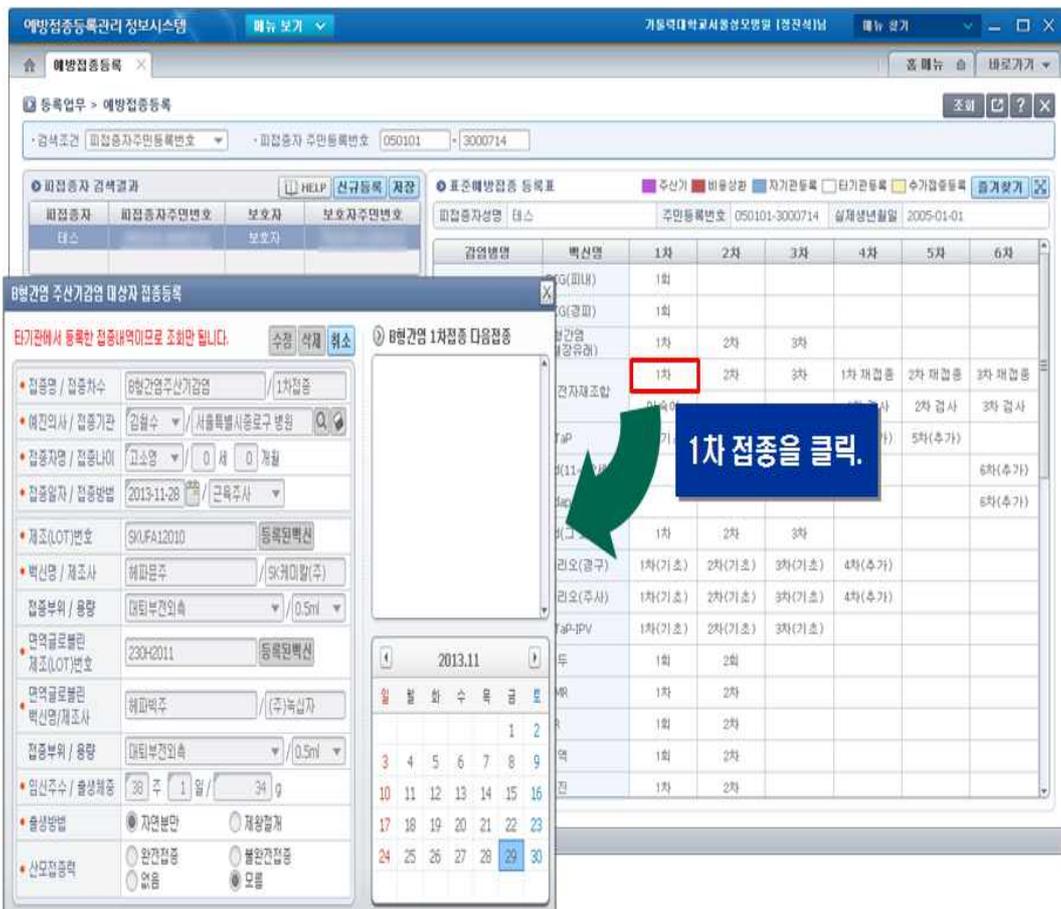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B형간염	B형간염 (혈장유래)	1차	2차	3차			
	유전자재조합	1차	2차	3차	1차 재접종	2차 재접종	3차 재접종
		미숙아				1차 검사	2차 검사

접종명 처수 접종기관 세조번호 접종일자

<그림 2. 대상자 등록신청(2)>

2.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등록

- ①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의 '1차 접종'을 클릭합니다.
- ②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접종내역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 기본적인 예방접종 정보 외에 면역글로불린, 임신주수, 출생체중, 출생방법, 산모 예방접종력을 입력합니다.
- ③ 산모검사결과지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내역까지 모두 입력해야 대상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림 3. 대상자 등록신청(3)>

3. B형간염 미숙아 및 2·3차 접종 내역등록

- ①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의 ‘미숙아 또는 2·3차 재접종’을 클릭합니다.
- ②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접종내역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 미숙아 재접종의 경우 피접종자의 ‘접종시 체중’ 항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미숙아 재접종 등록 시에는
피접종자의 접종시 체중만 추가로 입력 후 등록**

<그림 4. 미숙아 접종 내역 등록>

- ③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접종내역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 2·3차 접종은 경우 기초 예방접종 입력 항목과 동일합니다.



<그림 5. 2·3차 접종내역 등록>

4. 항원·항체 검사 등록

- ①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의 '1·2·3차' 검사를 클릭합니다.
- ②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접종내역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항원, 항체 검사의 경우 검사일자, 검사항목, 검사 결과 등 입력

<그림 6. 항원·항체 검사 등록>

5. 재접종 · 재검사 등록

- ①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의 ‘1· 2· 3차 재접종 또는 2· 3차 검사’ 를 클릭합니다.
- ②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접종내역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대상자 접종등록

등록명* / 접종차수* : B형간염주산기감염 / 1차재접종

병원명* / 접종기관* : 이관종 / 서울대학교병원

접종자명* / 접종나이* : 이선영 / 8 세 10 개월

접종일자* / 접종방법 : 2013-11-12 / 근육주사

제조(LOT)번호* : D430070 / 등록원번호

백신명/제조사 : 헤파박스-전티에프주 / 베르니바이오텍코

접종부위/용량 : 대퇴부전외측 / 0.5ml

실제생년월일 : 2013-11-29

3차	4차	5차	6차
3차	1차 재접종	2차 재접종	3차 재접종
2013.12.03	2013.12.03	2차 검사	3차 검사

재접종 및 재검사의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접종명	차수	접종기관	제조번호	접종일자
B형간염(유전자재)	1	서울특별시종로구 병원	SKUFA12010	20131129
B형간염(유전자재)	2	서울특별시종로구 병원	SKUFA11002	20131202

<그림 7. 재접종 · 재검사 등록>

6. 등록 시 기타화면

6.1. 대상자 사업 종료 시

- ① 대상자가 사업 종료(면역획득 또는 감염)된 경우 다음 차수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방접종] 경고 메시지

해당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 2차 접종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검사 결과 면역획득 또는 감염자인 경우 사업 종료되어 다음 차수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방접종성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결핵	BCG(국내)	1회					
	BCG(국외)	1회					
	B형간염 (활성유래)	1차	2차	3차			
2013.12.01	1차 재접종	2차 재접종	3차 재접종				
2013.12.03	2차 검사	3차 검사					
	3차(기초)	4차(추가)	5차(추가)	6차(추가)			
					6차(추가)		
						6차(추가)	

<그림 8. 기타 화면(1)>

6.3. 이전 차수 등록전

- ① 사업 스케줄대로 집중 및 검사 내역 등록이 가능하며, 이전 차수를 등록하기 전이라면 다음차수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방접종] 경고 메시지

이전 차수 집중을 등록해 주세요.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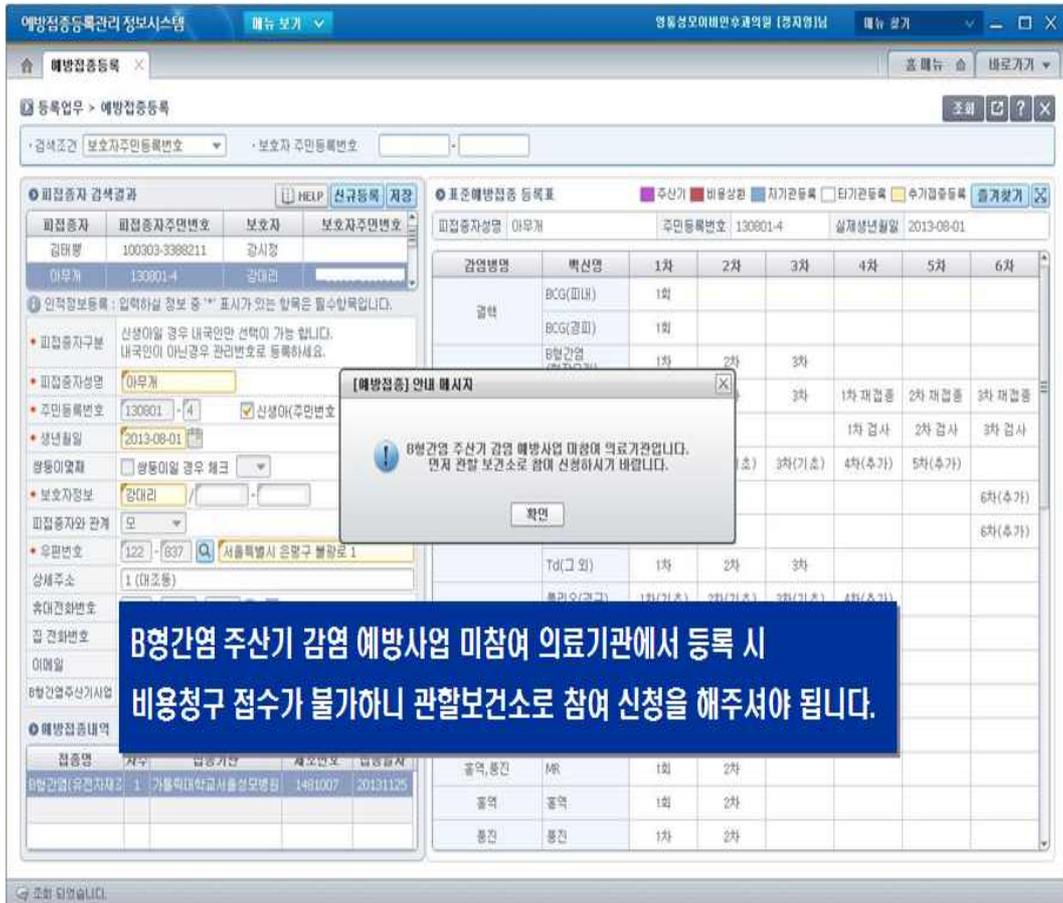
이전차수를 등록하기 전이라면 다음 차수 등록이 불가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13.12.02					
1차	2차	3차			
2005.01.03	2차	3차	1차 재접종	2차 재접종	3차 재접종
2013.11.26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2013.11.20	2차(기초)				

<그림 10. 기타 화면(3)>

6.4.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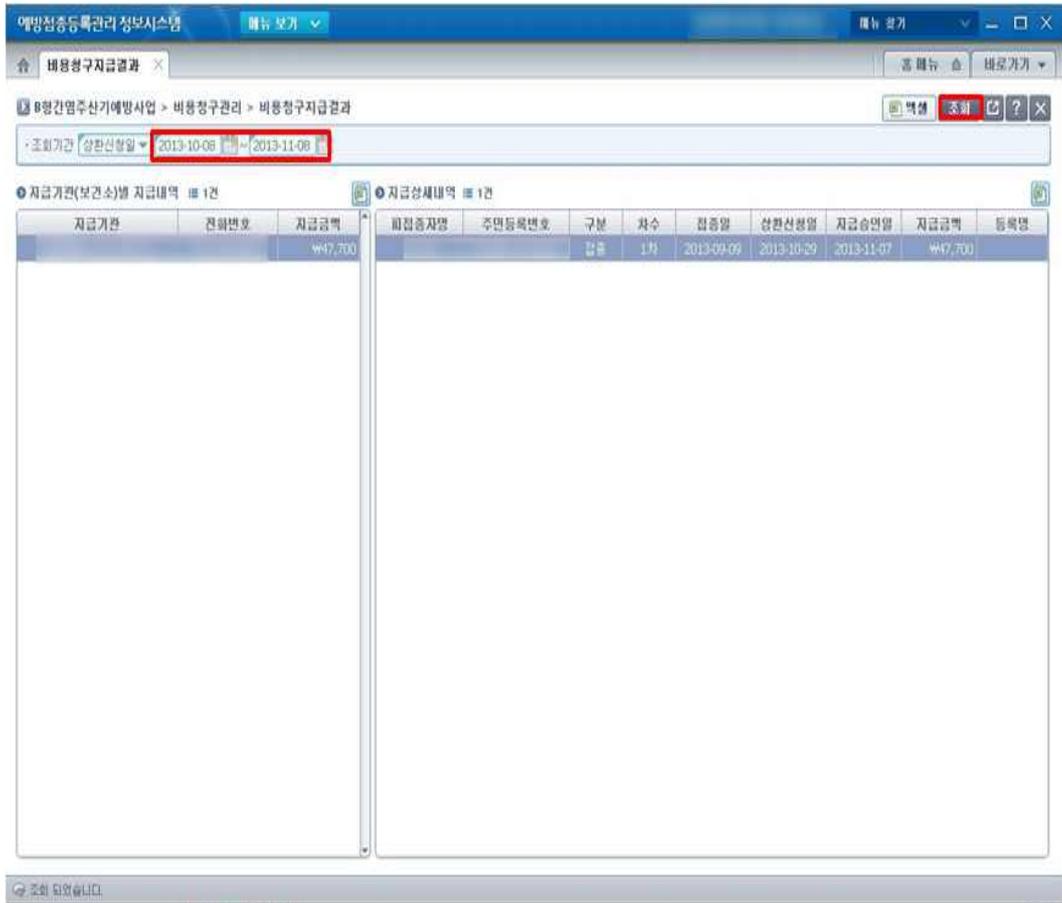
- 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을 등록하는 경우 비용청구 접수가 불가하니 관할보건소로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1. 기타 화면(4)>

7. 비용청구 지급결과 확인

- 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청구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엑셀’버튼을 클릭하면 엑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림 12. 비용청구 지급결과 확인>

부 록

Ⅲ.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시도	시군구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	종로구	02-2148-3552	02-2148-5838
	중구	02-3396-6363	02-3396-4362
	용산구	02-2199-8073	02-2199-8352
	성동구	02-2286-7089	02-2286-7042
	광진구	02-450-1958	02-450-1695
	동대문구	02-2127-4928	02-3299-2642
	중랑구	02-2094-0838	02-3423-0062
	성북구	02-920-1928	02-920-1986
	강북구	02-901-7655	02-901-7669
	도봉구	02-2091-4555	02-2091-6364
	노원구	02-2116-4515	02-2116-4646
	은평구	02-351-8210	02-351-5682
	서대문구	02-330-1824	02-330-1840
	마포구	02-3153-9072	02-3153-9099
	양천구	02-2620-3877	02-2653-9226
	강서구	02-2600-5874	02-2620-0498
	구로구	02-860-2040	02-860-2654
	금천구	02-2627-2685	02-2627-2104
	영등포구	02-2670-4766	02-2670-4876
	동작구	02-820-9579	02-820-9497
	관악구	02-879-7171	02-879-7851
	서초구	02-2155-8063	02-2155-8197
	강남구	02-3423-7103	02-3423-8902
	송파구	02-2147-3505	02-2147-3897
강동구	02-3425-6684	02-3425-7269	
부산	중구	051-600-4736	051-600-4750
	서구	051-240-4870	051-240-4799
	동구	051-440-6509	051-440-4996
	영도구	051-419-4939	051-419-4909
	부산진구	051-608-6081	051-605-4799
	동래구	051-550-6751	051-550-4799
	남구	051-607-6425	051-607-6429
	북구	051-309-7013	051-363-8008
	해운대구	051-749-7541	051-749-4799
	사하구	051-220-5738	051-220-5779
	금정구	051-519-5035	051-519-5080
	강서구	051-970-3422	051-970-4799
	연제구	051-665-4795	051-665-4709
	수영구	051-610-5653	051-610-5637
	사상구	051-310-4888	051-310-4849
	기장군	051-709-4834	051-709-4800
	대구	중구	053-661-3827
동구		053-662-3261	053-662-3129

	서구	053-663-3122	053-663-3119
	남구	053-664-3681	053-664-3619
	북구	053-665-3272	053-665-3279
	수성구	053-666-3146	053-666-3129
	달서구	053-667-5643	053-667-5619
	달성군	053-668-3085	053-282-7625
인천	중구	032-760-6028	032-760-6019
	동구	032-770-5742	032-770-5709
	남구	032-880-5417	032-880-5474
	연수구	032-749-8085	032-749-8159
	남동구	032-453-5111	032-453-5079
	부평구	032-509-8251	032-509-8658
	계양구	032-430-7879	032-551-5774
	서구	032-560-5054	032-562-0707
	강화군	032-930-4068	032-930-3642
광주	용진군	032-899-3144	032-899-3129
	동구	062-608-3332	062-226-8052
	서구	062-350-4157	062-960-8758
	남구	062-607-4467	062-607-4306
	북구	062-410-8994	062-510-1391
울산	광산구	062-960-8758	062-960-8707
	중구	052-290-4343	052-290-4349
	남구	052-226-2434	052-226-2467
	동구	052-209-4101	052-209-4179
	북구	052-241-8246	052-241-8245
세종시	울주군	052-229-8050	052-229-8059
	세종시	044-301-2143	044-301-211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031-228-5735	031-228-5809
	수원시권선구	031-228-6735	031-228-6819
	수원시팔달구	031-228-7735	031-228-7620
	수원시영통구	031-228-8829	031-228-8794
	성남시수정구	031-729-3846	031-729-4847
	성남시중원구	031-729-3906	031-729-4899
	성남시분당구	031-729-3963	031-729-3959
	부천시원미구	032-625-4234	032-625-4209
	부천시소사구	032-625-4401	032-625-4419
	부천시오정구	032-625-4473	032-625-4479
	안양시만안구	031-8045-3040	031-8045-3189
	안양시동안구	031-8045-4861	031-8045-4409
	안산시단원구	031-481-3513	031-481-3485
	안산시상록수	031-481-5945	031-481-3785
	용인시처인구	031-324-4926	031-324-2418
용인시기흥구	031-324-6924	031-324-6915	

	용인시수지구	031-324-8935	031-324-8936
	평택시송탄	031-8024-7211	031-8024-7249
	평택시 평택	031-8024-4354	031-8024-4359
	광명시	02-2680-5527	02-2680-6044
	시흥시	031-310-5851	031-310-5889
	군포시	031-390-8999	031-461-0874
	화성시	031-369-3559	031-369-3560
	이천시	031-644-4086	031-631-2740
	김포시	031-980-5484	031-980-5053
	광주시	031-760-2358	031-760-1426
	안성시	031-678-5914	031-676-2769
	하남시	031-790-6549	031-790-6580
	의왕시	031-345-3592	031-345-3579
	오산시	031-370-6056	031-370-3558
	여주시	031-887-3634	031-887-3606
	양평군	031-770-3515	031-770-3537
	과천시	02-2150-3823	02-2150-1540
	고양시덕양구	031-8075-4031	031-968-0219
	고양시일산동구	031-8075-4117	031-908-1292
	고양시일산서구	031-8075-4172	031-976-2042
	의정부시	031-828-4546	031-873-7719
	남양주시	031-590-4753	031-590-2559
	파주시	031-940-5598	031-940-4889
	구리시	031-550-8666	031-550-8380
	포천시	031-538-3643	031-538-3648
	양주시	031-8082-7171	031-8082-7109
	동두천시	031-860-3396	031-866-2301
	가평군	031-580-2847	031-580-2559
	연천군	031-839-4073	031-839-4192
강원도	춘천시	033-250-4596	033-253-5716
	원주시	033-737-4074	033-737-4991
	강릉시	033-660-3093	033-660-4764
	동해시	033-530-2406	033-531-3998
	태백시	033-550-3849	033-550-2941
	속초시	033-639-2921	033-636-0188
	삼척시	033-570-4669	033-575-1139
	홍천군	033-430-4026	033-435-1566
	횡성군	033-340-5643	033-340-5608
	영월군	033-370-2441	033-372-2190
	평창군	033-330-4851	033-330-4829
	정선군	033-560-2116	033-563-4000
	철원군	033-450-5116	033-450-5435
	화천군	033-440-2861	033-440-2464
	양구군	033-480-2788	033-482-0785

	인제군	033-460-2247	033-460-2429	
	고성군	033-680-3959	033-681-2183	
	양양군	033-670-2540	033-670-2493	
충북	청주시상당	043-200-4037	043-200-4086	
	청주시흥덕	043-200-4131	043-200-4122	
	충주시	043-850-3534	043-850-3509	
	제천시	043-641-3236	043-641-3239	
	청원군	043-251-4136	043-251-4788	
	보은군	043-540-5615	043-544-2574	
	옥천군	043-730-2164	043-730-2109	
	영동군	043-740-5593	043-742-4090	
	증평군	043-835-4225	043-835-4209	
	진천군	043-539-7328	043-537-0752	
	괴산군	043-830-2315	043-830-2338	
	음성군	043-871-2370	043-871-1951	
	단양군	043-420-3216	043-420-3209	
	충남	천안시동남구	041-521-2654	041-521-2659
		천안시서북구	041-521-2554	041-521-2559
공주시		041-840-8763	041-854-4101	
보령시		041-930-4129	041-930-9090	
아산시		041-537-3411	041-537-3429	
서산시		041-661-6524	041-660-2743	
논산시		041-746-8036	041-746-8019	
계룡시		042-840-3523	042-840-3569	
당진시		041-360-6013	041-360-6029	
금산군		041-750-4335	041-750-4399	
부여군		041-834-4000	041-830-2489	
서천군		041-950-6716	041-950-6779	
청양군		041-940-4525	041-940-4525	
홍성군		041-630-9035	041-631-9051	
예산군		041-339-8033	041-339-8009	
태안군	041-671-5224	041-675-4105		
전북	전주시	063-230-5251	063-230-5299	
	군산시	063-460-3261	063-463-1470	
	익산시	063-859-4832	063-859-4239	
	정읍시	063-539-6118	063-539-6531	
	남원시	063-625-3864	063-636-5931	
	김제시	063-540-1348	063-540-1371	
	완주군	063-290-3042	063-290-3020	
	진안군	063-430-8552	063-430-2712	
	무주군	063-320-8241	063-320-8241	
	장수군	063-350-3112	063-351-5010	
	임실군	063-640-3124	063-640-3117	
순창군	063-650-5241	063-650-5229		

	고창군	063-560-8758	063-560-8719
	부안군	063-580-3811	063-580-4672
전남	목포시	061-270-8800	061-270-8080
	여수시	061-690-2658	061-690-8131
	순천시	061-749-4168	061-749-4766
	나주시	061-339-2157	061-339-2833
	광양시	061-797-4041	061-797-4056
	담양군	061-380-3983	061-380-3990
	곡성군	061-360-8262	061-360-8597
	구례군	061-780-2012	061-780-2770
	고흥군	061-830-5796	061-830-5593
	보성군	061-850-5683	061-850-8516
	화순군	061-379-5331	061-379-5380
	장흥군	061-860-0547	061-863-3702
	강진군	061-430-3553	061-430-3539
	해남군	061-530-5561	061-530-5597
	영암군	061-470-6536	061-470-6576
	무안군	061-450-5051	061-450-5159
	함평군	061-320-2438	061-320-3527
	영광군	061-350-5562	061-350-5124
	장성군	061-390-8325	061-390-7568
	완도군	061-550-6765	061-550-6789
	진도군	061-540-6073	061-540-6082
신안군	061-240-8818	061-240-8892	
경북	포항남구	054-270-4033	054-270-4020
	포항북구	054-270-4133	054-270-3894
	경주시	054-779-8603	054-760-7531
	김천시	054-420-8023	054-420-6664
	안동시	054-840-5968	054-840-5939
	구미시구미	054-480-4071	054-480-4019
	구미시선산	054-480-4155	054-480-4129
	영주시	054-639-6462	054-634-4884
	영천시	054-339-7780	054-330-6479
	상주시	054-537-8716	054-537-6520
	문경시	054-550-8074	054-550-6479
	경산시	053-810-6317	056-811-3002
	군위군	054-380-7453	054-380-6479
	의성군	054-830-6678	054-833-0664
	청송군	054-870-7221	054-873-7103
	영양군	054-680-5194	054-680-5139
	영덕군	054-730-6825	054-730-6479
	청도군	054-370-2646	054-370-2679
	고령군	054-950-6474	054-955-3374
	성주군	054-930-8145	054-930-8109

	칠곡군	054-979-6477	054-979-6479
	예천군	054-650-6478	054-650-6479
	봉화군	054-679-6722	054-679-6719
	울진군	054-789-5031	054-789-3367
	울릉군	054-790-6833	054-790-6819
경남	창원시	055-225-5776	055-287-6522
	마산시	055-225-6004	055-225-4770
	진해시	055-225-6128	055-225-4771
	진주시	055-749-4918	055-749-2949
	통영시	055-650-6126	055-650-6199
	사천시	055-831-3621	055-831-6041
	김해시	055-330-4484	055-722-0866
	밀양시	055-359-7023	055-359-7097
	거제시	055-639-6153	055-639-6129
	양산시	055-392-5165	055-392-5168
	의령군	055-570-4047	055-570-4018
	함안군	055-580-3211	055-580-3149
	창녕군	055-530-6277	055-530-6250
	고성군	055-670-4090	055-670-4019
	남해군	055-860-8776	055-860-8799
	하동군	055-880-6661	055-880-6620
	산청군	055-970-7536	055-970-7519
	함양군	055-960-4642	055-964-9024
	거창군	055-940-8355	055-940-8399
	합천군	055-930-3693	055-930-4537
제주도	제주시제주	064-728-4096	064-728-4089
	제주시동부	064-728-4207	064-783-7328
	제주시서부	064-728-4161	064-796-7422
	서귀포시서귀포	064-760-6085	064-760-6019
	서귀포시동부	064-760-6131	064-764-3945
	서귀포시서부	064-760-6274	064-760-6219

2015년 B형 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 의료기관용

발행일 : 2015년 1월 1일

발행처 : 질병관리본부

주소 : (363-951)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
종관리과

전화 : 043-719-6848~52

FAX : 043-719-68599

제작 : 이문

ISBN 978-89-6838-043-3 (93510)
